

# 광주·전남 미제 살인사건 18건 끝까지 쫓는다

### 경찰, 전국 267건 수사기록 148만장 DB 구축 완료...추적 의지 보여 광주·전남 2000년 이후 해결된 사건 없어...수사전담팀 확대 등 필요

끝까지 쫓겠다. 경찰청이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에서 벌어진 '살인미제사건 수사기록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없도록 새롭게 나오는 범죄 혐의를 추적,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미제 사건에 대한 해결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이 시스템에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서 수사 중인 살인미제사건 267건의 수사기록 148만장, 이미지 1만7000장, 영상 700GB, 음성 7GB 등이 등록됐다.

◇광주·전남 미제사건 18건, 언제쯤 해결되나=6일 경찰청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는 광주·전남에서 2000년 이후 발생한 장기 살인 미제 사건 18건(광주11건·전남7건)이 포함됐다.

해당 사건 수사 서류기록만 7만 3000여장이 넘는다. 20GB가 넘는 영상 5000여장이 넘는 사건 사

진도 모두 전자기록화 됐다.

'미제사건'은 그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범죄나 사고를 말한다.

그동안 미제사건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이라고 불렀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성폭력처벌법과 2015년 8월 1일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강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이에 2000년 8월 1일 이후로 발생한 모든 살인사건은 이제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영구 미제 사건이라고 부르는 일이 없어졌다.

2000년 이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18건(광주 11건, 전남 7건)의 강력 미제사건 중 해결된 건 전 무하다.

가장 최근 해결되지 않은 광주지역 강력 미제사건은 2009년 3월 9일 광주시 북구 흥중동 모 교회

■ 광주·전남청에서 수사중인 미제살인사건 발생연도별 현황

(단위:건)

지방청	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광주	11		2		1	2	2	1	1	1	1			
전남	7	1				1	2		1	1		1		

<경찰청 제공>

주차장 입구에서 40대 남성이 둔기에 맞고 숨진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면식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찾지 못했다.

또 2001년 9월 4일 서구 내방동의 한 가정집에서 임신부(35)가 10군데가 넘게 흉기에 찔린 채 태아와 함께 숨진 사건도 십년이 넘도록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남아있다. 동구 60대 노인 둔기 피살 사건(2008년 10월 19일), 광산구 주유소 소장 둔기 피살 사건(2005년 5월 16일), 용봉동 여대생알몸 테이프 피살 사건(2004년 9월 14일) 등도 마찬가지다.

전남의 주요 미제 사건은 목포 여대생 성폭행 살해사건(2010년 10월 15일), 나주 지식강 40대 여성 속옷 변사체 사건(2008년 9월), 화순 80대 독거 노인 살해사건(2007년 1월), 순천 농수로 60대 둔

기 피살 사건(2005년 5월), 영암 부인 흉기 살해사건(2004년 8월), 나주간호사 알몸 살해사건(2000년 8월) 등 7건에 이른다.

◇미제사건 전담팀 확대 필요성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1년 12월부터 세종경찰청을 제외한 17개 시도경찰청에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미해결된 강력범죄를 추적하고 있다.

광주·전남청도 미제사건 전담팀이 꾸려졌다. 다만 인력은 각각 3명 뿐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올해 상반기 1명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인원이 채워지지 않았다.

내년 상반기에 광주·전남청 모두 추가로 1명의 인력을 더 확보할 계획이지만, 장기 미제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수많은 수사인력에 수사본부까지 차리고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극

소수의 수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살인사건은 발생 15일이 지나면 해결이 어려워진다. 장기 미제사건의 경우엔 1건당 3명의 수사 인력이 하루 12시간씩 매달려도 사건 자료 분석에만 한 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광주·전남의 경우에는 미제사건 전담팀에서 올해부터 실종사건까지 시범적으로 담당하게 됐다.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일선 서에 수사 방향을 지도하고 현장에 인력 배치 등을 제시해야 하는 업무까지 담당한다.

경찰의 인식 변화도 시급하다. 경찰청 담당자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사중인 사안으로 고인과 유족에 대한 2차 피해·피의자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으로 공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 보도가 나오면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제사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외부로 알려 제보를 받고, DNA 검사도 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이미 다 알려진 미제사건에 대해 경찰청이 공개를 거부하는 건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윤창호법 위험'에 처벌 약해진다고?

### 광주지법,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지만 법정 구속 등 엄벌 의지

광주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내놓으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피해 유족과의 합의에도 법정 구속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점을 의식한 듯 법정에서 엄벌 의지를 강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새벽 1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모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위반해 좌회전하던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한속도(시속 60km)를 넘어 시속 126km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을 감형 요소로 고려했음에도, A씨를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은 그로 인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한 채 범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운전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 실행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B(33)씨에 대한 선고 과정에서 "현재의 위험 결정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B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례에도, 지난 8월 31일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의 위험 결정에 따라 윤창호법 관련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 가중 처벌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었다.

재판부는 B씨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반영해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지난 9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C(4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씨는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윤창호법 위반 결정에 따라 일반 규정을 적용받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재 결정으로 처벌이 약화되는 수혜자가 됐다는 관측도 나왔다. 재판부는 "현재 위험 결정에도 한번 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100% 구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폭설·재난 대비 합동훈련 6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두동 도로확장공사 구간에서 열린 올 겨울 폭설 등의 재난 대비 합동훈련에서 교통 사고를 가상해 119 소방대원들이 사고차량에서 시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스쿨미투' 연루 의혹 일부 교사 징계처분 무효

### 법원 '홍북학원 조치 잘못'

'스쿨미투' 사건에 연루된 의혹 등을 들어 일부 교사들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내린 학교법인 홍북학원의 조치는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학교측이 일부 교사들에 대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법 행위에 대한 학교측의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교사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

판사 전일호)는 홍북학원 소속 교사들인 A씨 등 6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사 4명에 대한 학교측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징계 기간 받지 못했던 상여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교사들에 대한 제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등의 의혹이 학교에 제기된 뒤 이뤄진 무기명 설문조사 및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 수사를 받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 직위해제됐다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직위해제 처

분이 해제됐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징계 요구에 따라 학교측으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역 3개월, 감봉 1개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이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처분도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따져 6명 중 2명의 징계 사유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2명의 교사들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학교측의 징계사유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나머지 2명의 경우 적법한 징계 처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의 학교측과 광주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